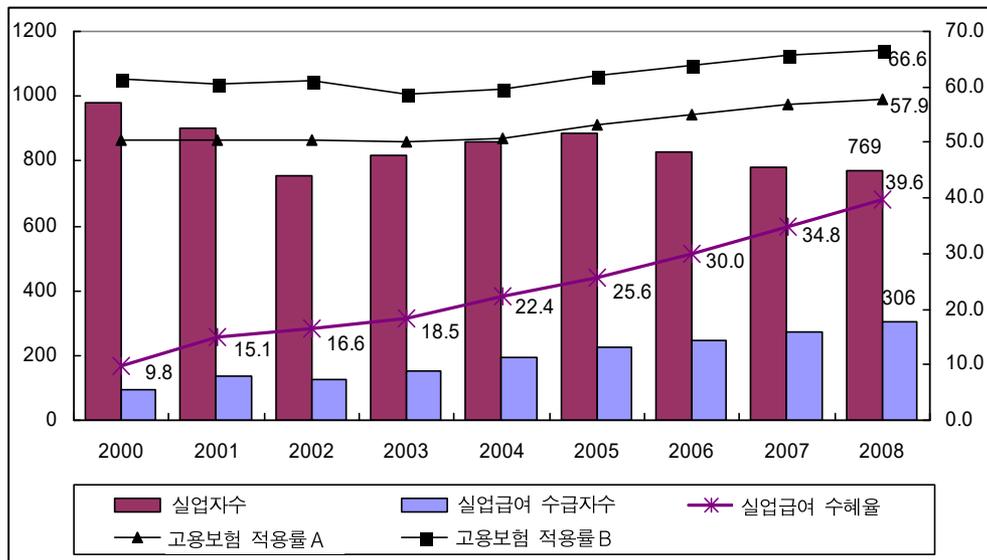


실업급여의 임금대체를 국제비교

- 2008년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는 769천 명이며, 실업급여 수급자수는 306천 명으로 실업급여 수혜율(실업급여 수급자수/실업자수)은 39.6%로 나타나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 - 2008년 현재 우리나라 고용보험 적용률(피보험자수/임금근로자)은 임금근로자 대비 57.9%, 상용직·임시직 근로자 대비 66.6%를 기록하고 있음.
- 한국의 구직급여 임금대체율은 2008년 기준 43.3%로 나타났으며, 산업별로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47.8%를 기록하였고, 그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(46.6%), 부동산 및 임대업(46.5%)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46.6%)

[그림 1] 한국의 실업급여 수혜율 및 고용보험 적용률 추이

(단위: 천 명, %)



주: 고용보험 적용률 A는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의 임금근로자 대비 피보험자수 비중이며, 고용보험 적용률 B는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의 상용직·임시직 근로자 대비 피보험자수 비중임.
 자료: 통계청, 「경제활동인구조사」 원자료, 각년도.
 한국고용정보원(2009), 『고용보험통계연보(2008)』.
 노동부, 내부자료.

〈표 1〉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 추이

(단위 : 원, %)

|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
|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급여기초임금일액 | 24,287 | 24,444 | 25,645 | 26,345 | 27,024 |
| 평균임금일액 | 64,998 | 60,117 | 60,499 | 60,845 | 62,323 |
| 임금대체율 | 37.4 | 40.7 | 42.4 | 43.3 | 43.3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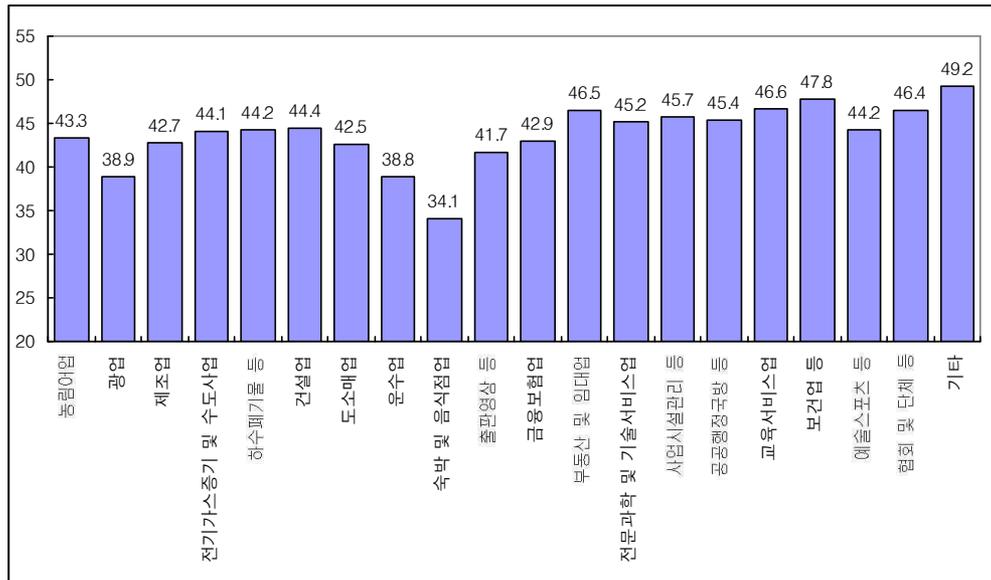
주 : 임금대체율은 평균임금일액 대비 평균 급여기초임금일액의 비율임.
 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(2009), 『고용보험통계연보(2008)』.

순으로 나타남. 반면 구직급여 임금대체율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(34.1%)이었으며, 그 다음으로 운수업(38.8%), 광업(38.9%) 순으로 나타남.

-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빈곤에 대한 보호장치 수준을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(2007년 기준)을 통해 비교해 보면, 한국은 실업 1년차에 31%로 나타나 미국·영국(28%)과 함께 하위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남.
 - OECD 회원국의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52% 수준으로 나타났으며, 룩셈부르크가 87%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, 그 다음으로 스위스(80%), 포르투갈(79%), 노르웨이(72%), 네덜란드(71%) 순으로 나타남. 반면 실업급여 임금대체율

〈그림 2〉 구직급여의 산업별 임금대체율(2008)

(단위 : %)



자료 : 한국고용정보원(2009), 『고용보험통계연보(2008)』.

〈표 2〉 실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(Net Replacement Rates) 비교(2007)

(단위 : %)

| | 1년 | 2년 | 3년 | 4년 | 5년 | 5년 평균 |
|----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|
| OECD(median) | 52 | 40 | 25 | 13 | 9 | 28 |
| 룩셈부르크 | 87 | 8 | 8 | 8 | 8 | 24 |
| 스위스 | 80 | 40 | 0 | 0 | 0 | 24 |
| 포르투갈 | 79 | 79 | 56 | 24 | 3 | 48 |
| 노르웨이 | 72 | 72 | 72 | 72 | 72 | 72 |
| 네덜란드 | 71 | 59 | 3 | 3 | 3 | 28 |
| 스페인 | 69 | 65 | 25 | 25 | 13 | 39 |
| 덴마크 | 68 | 68 | 68 | 68 | 9 | 56 |
| 프랑스 | 67 | 64 | 31 | 31 | 31 | 45 |
| 스웨덴 | 66 | 63 | 41 | 8 | 8 | 37 |
| 벨기에 | 65 | 63 | 63 | 63 | 63 | 63 |
| 독일 | 64 | 48 | 42 | 36 | 36 | 45 |
| 오스트리아 | 61 | 58 | 58 | 58 | 58 | 59 |
| 핀란드 | 60 | 58 | 33 | 33 | 33 | 43 |
| 아이슬란드 | 57 | 54 | 54 | 8 | 8 | 36 |
| 캐나다 | 52 | 14 | 14 | 14 | 14 | 22 |
| 아일랜드 | 50 | 50 | 50 | 50 | 50 | 50 |
| 헝가리 | 48 | 13 | 13 | 13 | 13 | 20 |
| 터키 | 46 | 0 | 0 | 0 | 0 | 9 |
| 일본 | 45 | 3 | 3 | 3 | 3 | 11 |
| 호주 | 42 | 42 | 42 | 42 | 42 | 42 |
| 폴란드 | 42 | 16 | 8 | 8 | 8 | 16 |
| 뉴질랜드 | 38 | 38 | 38 | 38 | 38 | 38 |
| 이탈리아 | 37 | 0 | 0 | 0 | 0 | 7 |
| 그리스 | 33 | 5 | 1 | 1 | 1 | 8 |
| 체코 | 33 | 11 | 11 | 11 | 11 | 15 |
| 슬로바키아 | 32 | 3 | 3 | 3 | 3 | 9 |
| 한국 | 31 | 0 | 0 | 0 | 0 | 6 |
| 미국 | 28 | 0 | 0 | 0 | 0 | 6 |
| 영국 | 28 | 28 | 28 | 28 | 28 | 28 |

주 : 임금대체율은 각종 사회부조, 주택급여, 가족급여 등을 제외한 실업급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, 노동시장의 핵심연령인 40세 장기근로자(long and uninterrupted employment) 기준임.

자료 : OECD(2009), "Tackling the Jobs Crisis" *Employment Outlook*

이 낮은 나라는 미국·영국(28%), 한국(31%), 슬로바키아(32%), 체코·그리스(33%), 이탈리아(37%), 뉴질랜드(38%) 순으로 나타남. 한국과 미국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각각 최장 240일, 26주로 짧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임금대체율이 낮은 수준임.

- 또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 5년 평균 임금대체율은 28%였으며, 한국은 미국과 더불어 가장 낮은 6%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,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(7%), 그리스(8%), 슬로바키아·터키(8%) 순으로 나타남.
- 참고로 OECD 회원국의 실업급여 지급액은 대부분 실직전 임금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정률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영국, 아일랜드, 아이슬란드, 폴란드는 평균 임금의 10~37%의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, 핀란드는 정률과 정액을 혼합하여 지급하고 있음. [KLI]

(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)